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7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김미애·박덕흠·김선교

이상휘 · 이헌승 · 조경태

박준태 · 강대식 · 신성범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 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

을 임차하여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 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삭제).
-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달걀을 위탁받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달걀 판매를 허용('23.3)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 라.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평가' 용어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따른"을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를 "제1항제7호의 죄로"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을 "제1항제7호의 죄를"로 한 다.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한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 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
| 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 |
|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 |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 | |
| 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 |
| | 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
| |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
| |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
| | 보관하는 경우 |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 략) |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 | 2 |
| 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 |
|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 | |
| 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 |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 | |
| 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 | |

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 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 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4. (생략)
- ③ (생략)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 략)
 - ④ 제21조제1항에 <u>따른</u>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 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 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 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 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 ⑨ (생 략) <신 설>

| <u>.</u> |
|---------------------|
| <u><삭 제></u> |
| <u><삭 제></u> |
| 3.・4.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
| (현행과 같음) |
| ④ 따른 식용란 |
| 선별포장업 및 |
| |
| |
| |
| |
| |
| |
| |
| |
| <u>.</u> |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제12조의4(건사명령 등) ① 실포 |

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 물의 처리・집유・가공・포장 ·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축산물시험 · 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 외시험 ·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 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 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
 출된 축산물
-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제기된 축산물
-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

제33조의2<u>(위해 평가)</u> ① (생 ⁷ 략)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u>위해 평가</u>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 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 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 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 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 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 지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 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 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 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 100 गाठ नर्य ठ गा।, |
|-----------------------------|
|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 |
|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
| 한다. |
| 제33조의2 <u>(위해성평가)</u> ① (현행 |
| 과 같음) |
| ② |
| <u>위해성평가</u> |
| |
| |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6 |
| 위해성평가 |
| <u>41 91 8 97 1</u> |
| |
| |
| |
| |
| |
| |
| |
| |

사며려 대사 추사무드이 버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 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른 <u>위해 평가</u>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37조(공표) ①・② (생 략)

로 정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 조의2제1항의 <u>위해 평가</u>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 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 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한다.
- ④·⑤ (생 략)

제45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

| ⑦ <u>위해성평가</u> |
|---------------------|
| |
| |
| , |
| 제37조(공표) ①・② (현행과 같 |
| 음) |
| ③ |
| <u>위해성평가</u> |
|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제7호의 죄로 |
| |
| |
| <u>제1항제7호의 죄를</u> |
| |
| <u>,</u> |

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③ ~ ⑦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3. (생 략) <신 설>

2. ~ 11. (생략)

③ ~ ⑤ (생 략)

| <u>.</u>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제*4*7조(과태근) ① (첨해교 가으
-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
 - 1. ~ 1의3. (현행과 같음)
 - 1의4.제12조의4제2항을위반하여검사기한내에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자료등을제출하지아니한자
 - 2. ~ 11.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